

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0. 11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문화원의 지원 육성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협조 등으로 조정토록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

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①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은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미문화원에 구미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.	제17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,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미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	

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구미문화원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구미문화원”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구미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원장의 책무) 구미문화원장은 구미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구미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 법 제15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구미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.
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방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9.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8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.

1.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
2.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
3.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(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)

제9조(기금의 조성) ①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10조(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구미문화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구미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인 이상
2.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
3.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

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구미문화원이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

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에 여유자금에 있을 때에는 국채·공채·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제12조(기금운용계획) ① 구미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
2.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대상사업
4.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회계관리)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입·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기금운영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14조(결산 및 보고)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미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에의 계상) 구미시장은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16조(문화행사, 문화기반시설 위탁) 구미시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